

위탁운영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직원 근무복 세탁 위탁운영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원 「계약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직원 근무복 세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본원 「계약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위탁운영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증권)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행(계약)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계약)보증증권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증권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한다.

②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량조정) 계약된 물품의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계약기간 동안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병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병원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규정 및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계약금액 조정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기일 및 장소에 시간을 엄수하여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수령하기까지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물품의 배송비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은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된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사양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구매사양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물품이 제작 및 발송 등 제반 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 전에 계약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의 사양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 및 대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계약 동일물품으로 무상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소정기간 내에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전액 병원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금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제출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 의거 대금을 지급한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물품을 납품(배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배송)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병원의 책임으로 납기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병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0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화의, 회사정리 절차 신청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2. 관계법령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영업을 취소된 경우
3.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사양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병원은 제20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병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납품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본원은 계약서 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을 복사, 이용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